

감정평가서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법보좌관 조성주
건명	임동현 소유물건 (2025타경20290)
감정서번호	2504-1-04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감정평가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을 경우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지감정평가사사무소

대전광역시 동구 회남로275번길 161(신하동)

Tel : 042-273-6458 Fax : 042-273-6450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	팔천구백팔십오만육천칠백원정(₩89,856,7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법보좌관 조성주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강제)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임동현 (2025타경2029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4.11	2025.04.07 ~ 2025.04.11	2025. 04. 1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8847 이	토지 하	8847 여	- 백	89,856,700
	합계					₩89,856,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가. 평가목적

본건기호(1,3,4,5)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소재 “송곡2리 복지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기호(2)는 “송곡2리 복지회관” 남동측 인근에, 기호(6)은 “송곡2리 복지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목적(강제)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나. 평가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규 및 감정평가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다. 평가방법

1. 본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의 조건은 해당사항이 없음.
2.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거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본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부동산의 물적사항 확인과 권리관계의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 04. 07 ~ 2025. 04. 11. 까지 실시하였음.
4.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 완료일자 인 2025年 04月 11日 자로 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라. 그 밖의 사항

1. 본건 목록 및 면적은 귀 의뢰목록에 의거 사정평가하였음.
2. 본건기호(2)지상에 자생하는 대나무 및 기호(4,5,6)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소나무 및 기타 활잡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하였음.
3. 본건기호(3) 지상에 조림되어 있는 입목(편백나무(묘목) 약 5~6주)은 관리상태불량으로 경제적가치가 미미하여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4. 본건기호(6)과 인접한 필지《송곡리 산66-1 및 168번지》 지적경계선상에 분묘가 소재하나, 평가목적상 이에 구매됨 없이 평가하였는 바, 본건에 편입여부는 전문기관에 의한 현황측량을 요하므로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건의 위치확인은 간이측으로 확인하였는 바, 인접 토지와외의 정확한 지적경계는 전문기관에 의한 현황측량을 요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Ⅱ. 토지가격의 산출

가. 대상토지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지가 (원/㎡)
1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72	대	162	주거 나지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9,800
2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105-6	전	476	전 (휴경지)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0,700
3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51-5	임	496	조림목 일부 전	보전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2,780
4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51-6	임	4,403	자연림	농림 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2,970
5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53	임	1,128	자연림	보전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3,100
6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60	임	2,182	자연림	생산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3,140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선정기준

-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2) 평가대상토지와 실제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 3) 평가대상토지와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할 것.
- 4)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2. 비교표준지 선정

본건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2025. 01. 01. 자 기준 공시지가 표준지중 다음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택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지가 (원/m ²)
A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157	대	585	단독 주택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평지	24,300
B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174-2	전	2,374	전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0,800
C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80	임	22,810	자연림	보전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3,190
D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41-12	임	5,141	자연림	생산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3,240
E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47-1	임	57,800	자연림	농림 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2,820

다. 시점수정

1. 지가변동률(충청남도 부여군)

기 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25.01.01~25.02.28	0.106%(1.00106배)	0.054%(1.00054배)	0.091%(1.00091배)	0.076%(1.00076배)
25.03.01~25.04.11	$0.051 \times 42/28$ ≒ 0.0465%	$0.027 \times 42/28$ ≒ 0.0405%	$0.048 \times 42/28$ ≒ 0.0720%	$0.040 \times 42/28$ ≒ 0.060%
합 계	0.183%(1.00183배)	0.095%(1.00095배)	0.163(1.00163배)	0.136%(1.00136배)

2. 생산자물가지수등락율

2024년 12월 지수 : 119.52

2025년 02월 지수 : 120.33

따라서 $[(120.33/119.52) - 1] \times 100 = 0.678\%$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시점수정치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생산자물가지수등락률은 일반재화의 가격동향에 대한 전국 평균치로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지수등락률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지역의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가변동율을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시 됨. 【100/100】

마. 개별요인 비교

1. 비교항목 ▶ 주택지대

- 가 로 조 건 : 가로의 폭, 구조, 계통 및 연속성, 포장.
- 접 근 조 건 : 교통시설과의 거리,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 환 경 조 건 :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획 지 조 건 :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 기 타 조 건 : 장래의 동향, 기타 농경지대

▶ 농업지대

- 접 근 조 건 :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교통의 편부
- 자 연 조 건 : 일조, 통풍,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및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등.
- 획 지 조 건 :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등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 기 타 조 건 :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임야지대

- 접근 조건 : 인근역 및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등
- 자연 조건 : 일조, 통풍, 지세, 방위 등, 토양 및 토질의 양부 등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 기타 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본건 기호	표준지 기 호	가 로 조 건	접 근 조 건	자 연 (환경) 조 건	획 지 조 건	행정적 조 건	기 타 조 건	합계
1	A	0.88	1.00	0.90	0.85	1.00	1.00	0.67
2	B	1.00	0.90	1.00	0.80	1.00	1.00	0.72
3	C	1.00	0.80	1.10	1.00	1.00	1.00	0.88
4	E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C	1.00	0.80	1.00	1.00	1.00	1.00	0.80
6	D	1.00	1.10	1.20	1.00	1.00	1.00	1.32

바. 그 밖의 요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거하여 인근토지의 지가수준·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가격자료

1) 인근지역의 평가전례

기호	소재지	지목	평가단가 (원/m ²)	용도 지역	평가 목적	기준 시점	비고
가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426-3	대	@71,000	계획관리	시가 참조	21.01.13	평가협회
나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394	전	@42,000	계획관리	경매	24.06.21	평가협회
다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산45-3	임	@9,300	보전관리	공매	18.01.05	평가협회
라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41-6	임	@8,300	생산관리	담보	17.11.14	평가협회
마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산55-1	임	@8,500	농림지역 생산관리	경매	20.08.10	평가협회

2) 비교사례지 선정

① 선정기준

- a.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 b. 실제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c.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d.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을 것

② 비교사례지 선정

본건에 적용할 비교사례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에 의거 상기 비교사례지 선정기준에 의거 기호 “가~마” 를 선택 적용함.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지가변동율(충청남도 부여군)

기호	기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가	21.01.13~25.04.11	4.886(1.04886배)	-	-	-
나	24.06.21~25.01.11	0.518%(1.00518배)	-	-	-
다	18.01.05~25.04.11	-	7.751%(1.07751배)	-	-
라	17.11.14~25.04.11	-	-	9.380(1.09380배)	-
마	20.08.10~25.04.11	-	-	-	4.290(1.04290배)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선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100/100】

5. 개별요인 비교

표준지 기호	선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합계
A	가	1.00	0.90	0.90	1.00	1.00	1.00	0.81
B	나	1.00	0.80	1.00	0.95	1.00	1.00	0.76
C	다	1.00	1.20	1.00	1.00	1.00	1.00	1.20
D	라	1.00	1.00	0.90	1.00	1.00	1.00	0.90
E	마	1.00	0.88	1.00	1.00	0.93	1.00	0.82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격차율 산정

구 분	선례가격	지 가 변동율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가격	산정격차율
	공시지가					적용격차율
선례지(가)	71,000	1.04886	1.00	0.81	60,319	2.477
표준지(A)	24,300	1.00183	1.00	1.00	24,344	2.48
선례지(나)	42,000	1.00518	1.00	0.76	32,085	2.965
표준지(B)	10,800	1.00183	1.00	1.00	10,819	2.97
선례지(다)	9,300	1.07751	1.00	1.20	12,025	3.766
표준지(C)	3,190	1.00095	1.00	1.00	3,193	3.77
선례지(라)	8,300	1.09380	1.00	0.90	8,170	2.517
표준지(D)	3,240	1.00163	1.00	1.00	3,245	2.52
선례지(마)	8,500	1.04290	1.00	0.82	7,269	2.574
표준지(E)	2,820	1.00136	1.00	1.00	2,823	2.57

7. 토지단가 산정

본건 기호	비교표준지		지 가 변동율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공시지가 (원/㎡)						
1	A	24,300	1.00183	1.00	0.67	2.48	40,450	40,000
2	B	10,800	1.00183	1.00	0.72	2.97	23,136	23,000
3	C	3,190	1.00095	1.00	0.88	3.77	10,593	11,000
4	E	2,820	1.00136	1.00	1.00	2.57	7,257	7,300
5	C	3,190	1.00095	1.00	0.80	3.77	9,630	9,600
6	D	3,240	1.00163	1.00	1.32	2.52	10,795	11,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산정

1. 거래사례

기 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추정단가 (원/㎡)	거래가액 (원)	목 적
		이용 상황					실거래일
#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288-2	대	658	계획 관리	@60,790	40,000,000	실거래
		-					22.07.14
#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106	전	922	계획 관리	@20,607	19,000,000	실거래
		-					24.10.09
#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110-7	임야	394	보전 관리	@14,213	5,600,000	실거래
		-					23.05.09
#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61	임야	397	생산 관리	@10,075	4,000,000	실거래
		-					23.03.18
#마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산22-4	임야	6,508	농림 생관	@8,973	58,400,000	실거래
		-					19.09.27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거래사례지 선정

1) 선정기준

- 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②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④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2) 거래사례지 선정

본건에 적용할 거래사례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 상기 비교사례지중 기호 "#가 ~ #마" 를 선택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사정보정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별도의 사정보정요인은 없음. 【100/100】

4. 지가변동률

기 호	기 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가	22.07.14~25.04.11	1.266(1.01266배)	-	-	-
#나	24.10.09~25.01.11	0.342%(1.00342배)	-	-	-
#다	23.05.09~25.04.11	-	0.395%(1.00395배)	-	-
#라	23.03.18~25.04.11	-	-	0.667(1.00667배)	-
#마	19.09.27~25.04.11	-	-	-	5.396(1.05396배)

5.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거래사례지는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시 됨. 【100/100】

6. 개별요인 비교

본건 기호	사례지 기호	가 로 조 건	접 근 조 건	자 연 (환경) 조 건	획 지 조 건	행 정 적 조 건	기 타 조 건	합 계
1	#가	0.88	1.00	0.90	0.85	1.00	1.00	0.67
2	#나	1.00	1.00	1.00	1.05	1.00	1.00	1.05
3	#다	1.00	0.85	0.93	1.00	1.00	1.00	0.79
4	#마	1.00	0.95	0.90	1.00	0.92	1.00	0.79
5	#다	1.00	0.85	0.80	1.00	1.00	1.00	0.68
6	#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7. 토지단가 산정

본건 기호	비교사례지		지 가 변동율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시산단가 (원/m ²)	결정단가 (원/m ²)
	기 호	토지가격 (원/m ²)					
1	#가	60,790	1.01266	1.00	0.67	41,244	41,000
2	#나	20,607	1.00342	1.00	1.05	21,711	22,000
3	#다	14,213	1.00395	1.00	0.79	11,272	11,000
4	#마	8,973	1.05396	1.00	0.79	7,471	7,500
5	#다	14,213	1.00395	1.00	0.68	9,703	9,700
6	#라	10,075	1.00667	1.00	1.00	10,142	10,000

아. 토지가액 조정 및 토지단가의 결정

본건 토지의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는 바,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토지단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토지단가와 비교할 때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를 토지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m 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m ²)	결정단가 (원/m ²)
1	40,000	41,000	40,000
2	23,000	22,000	23,000
3	11,000	11,000	11,000
4	7,300	7,500	7,300
5	9,600	9,700	9,600
6	11,000	10,000	11,000

Ⅲ.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가.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면적(m ²)	적용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비 고
토 지	8,847	-	89,856,700	
감정평가액 (합계)			89,856,700	

나. 결정의견

상기에서 산정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 할때 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72	대	계획관리지역	162	162	40,000	6,480,000	주거나지
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105-6	전	계획관리지역	476	476	23,000	10,948,000	"휴경지"
3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51-5	임야	보전관리지역	496	496	11,000	5,456,000	
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51-6	임야	농림지역	4403	4,403	7,300	32,141,900	
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53	임야	보전관리지역	1128	1,128	9,600	10,828,800	
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60	임야	생산관리지역	2182	2,182	11,000	24,002,000	
합 계								₩89,856,7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3,4,5)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소재 "송곡2리 복지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기호(2)는 남동측 인근에, 기호(6)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 일원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읍소재지외곽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한산시 됨.

(2) 교통상황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제반대중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주거나지"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전(휴경지)"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조림목 및 일부 전"

기호(4)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기호(6)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 : 지적도상 "맹지" 임.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2013-03-2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9-07-2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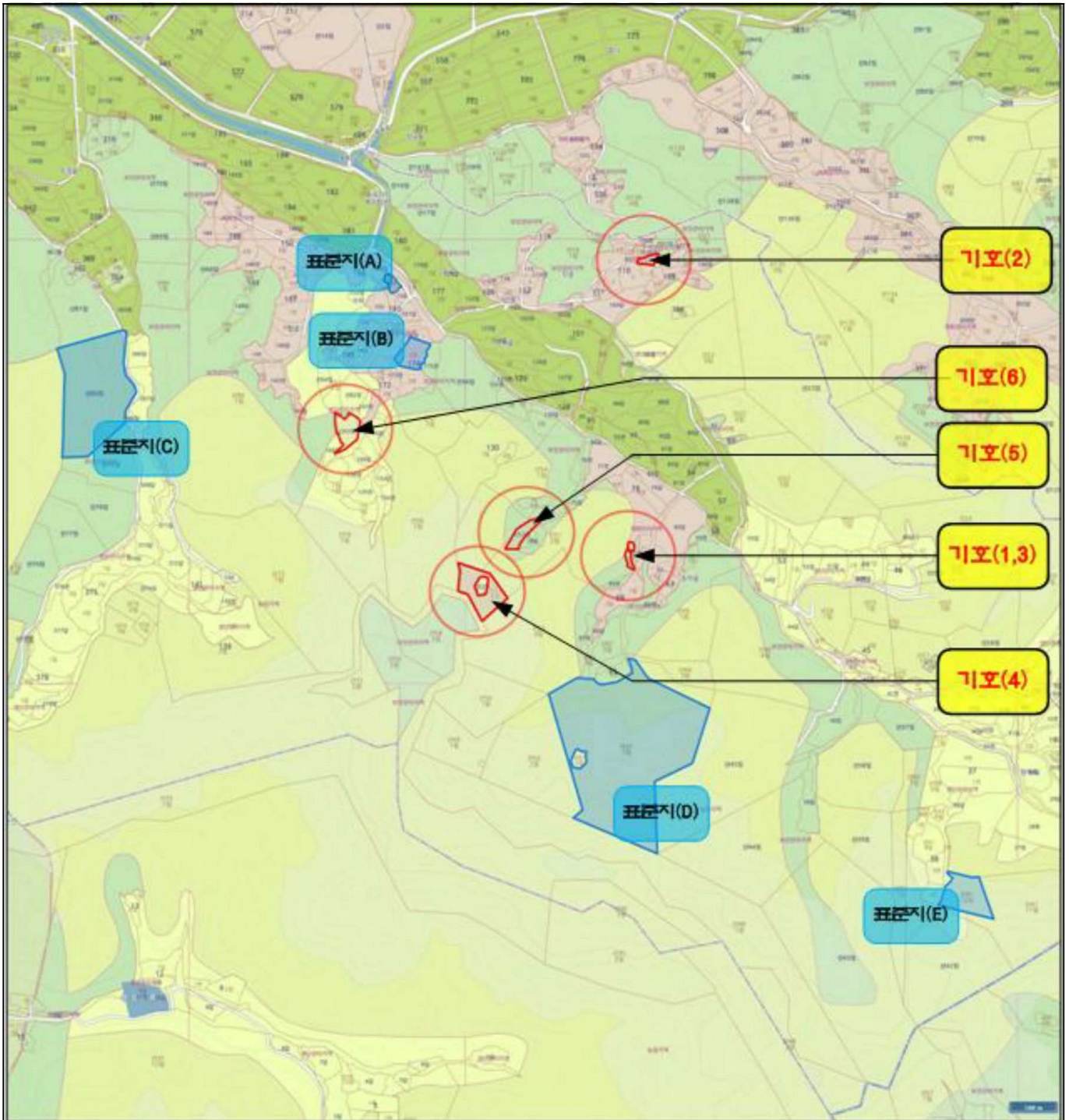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내역 "미상" 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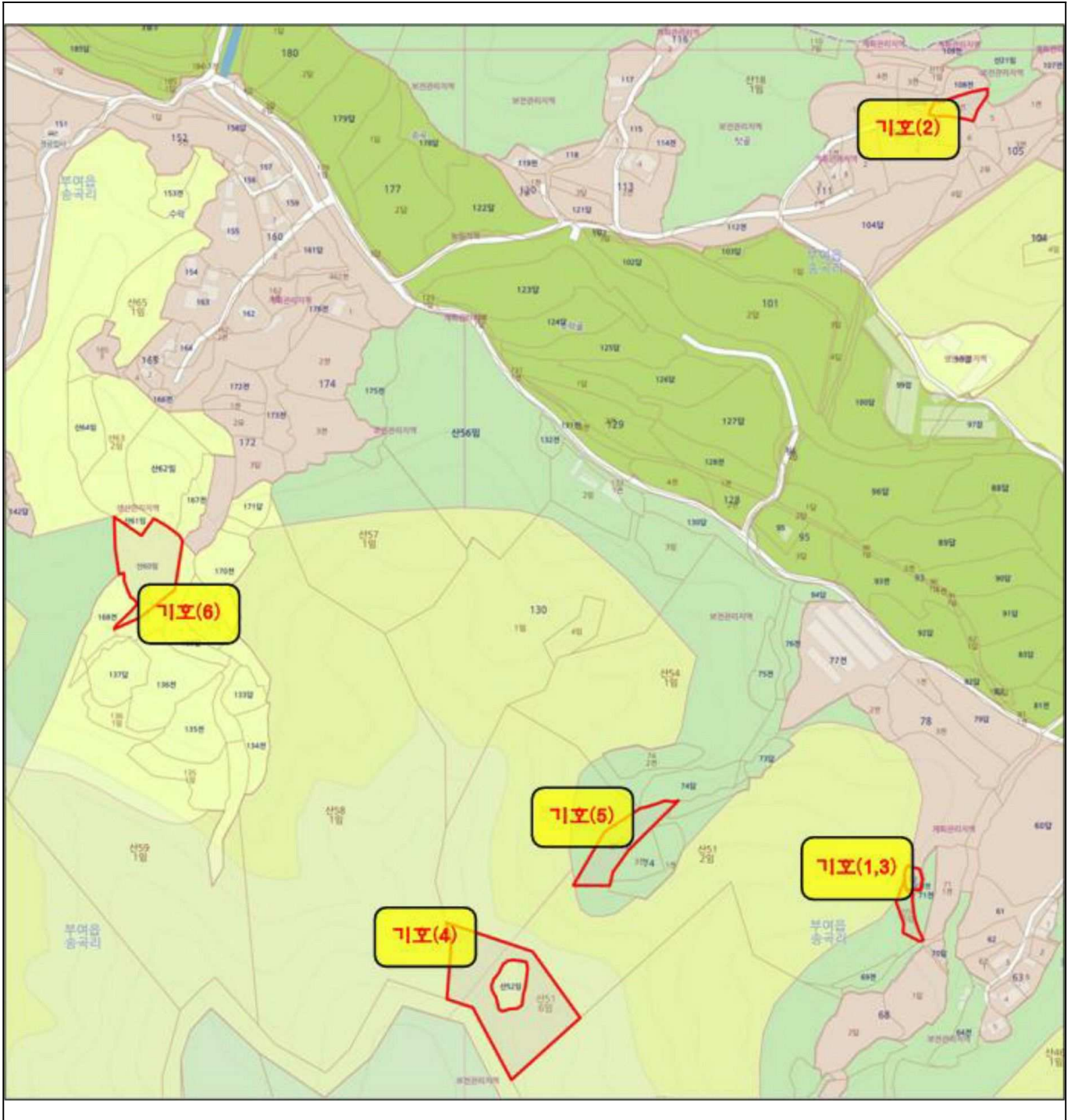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72외 5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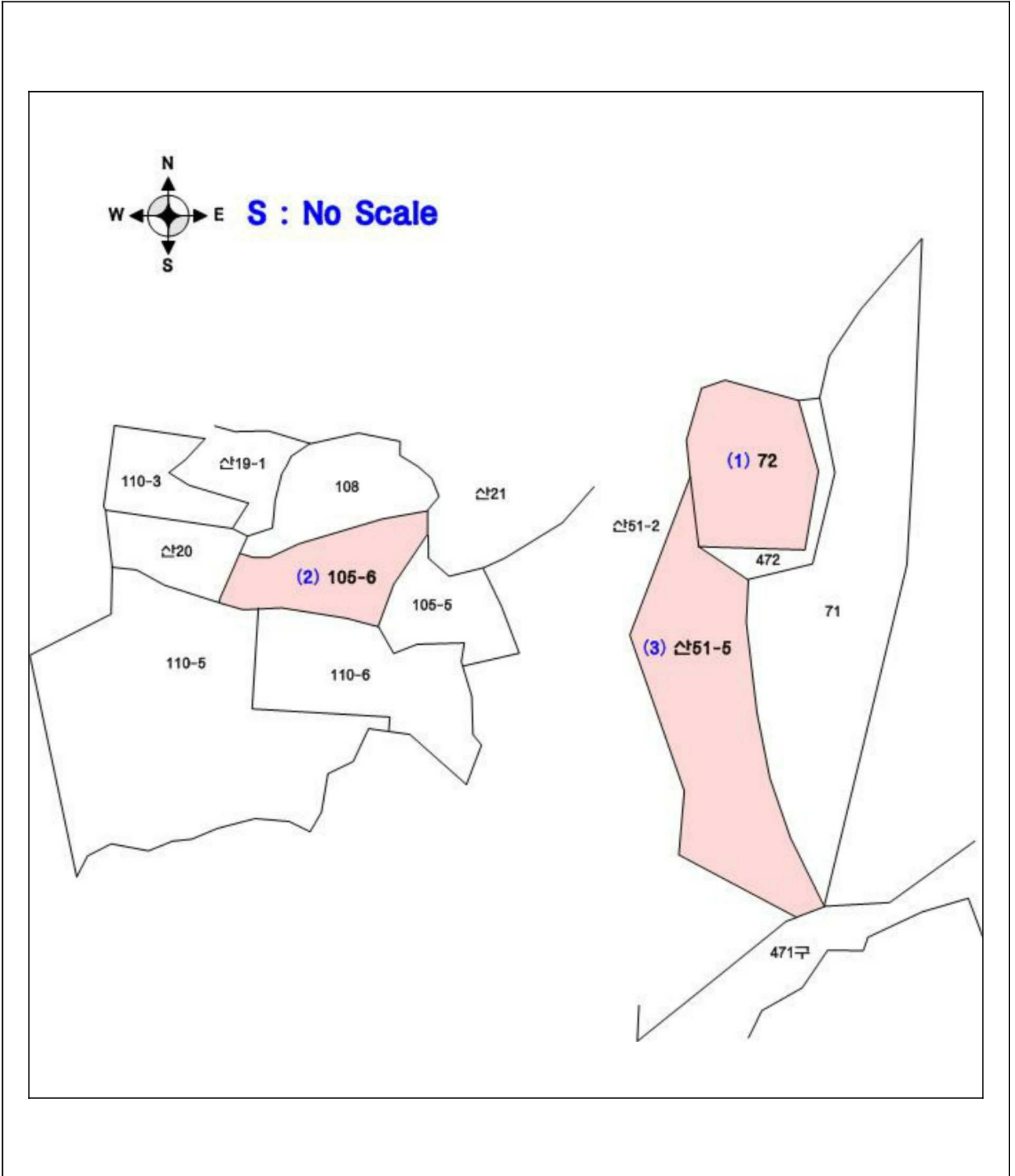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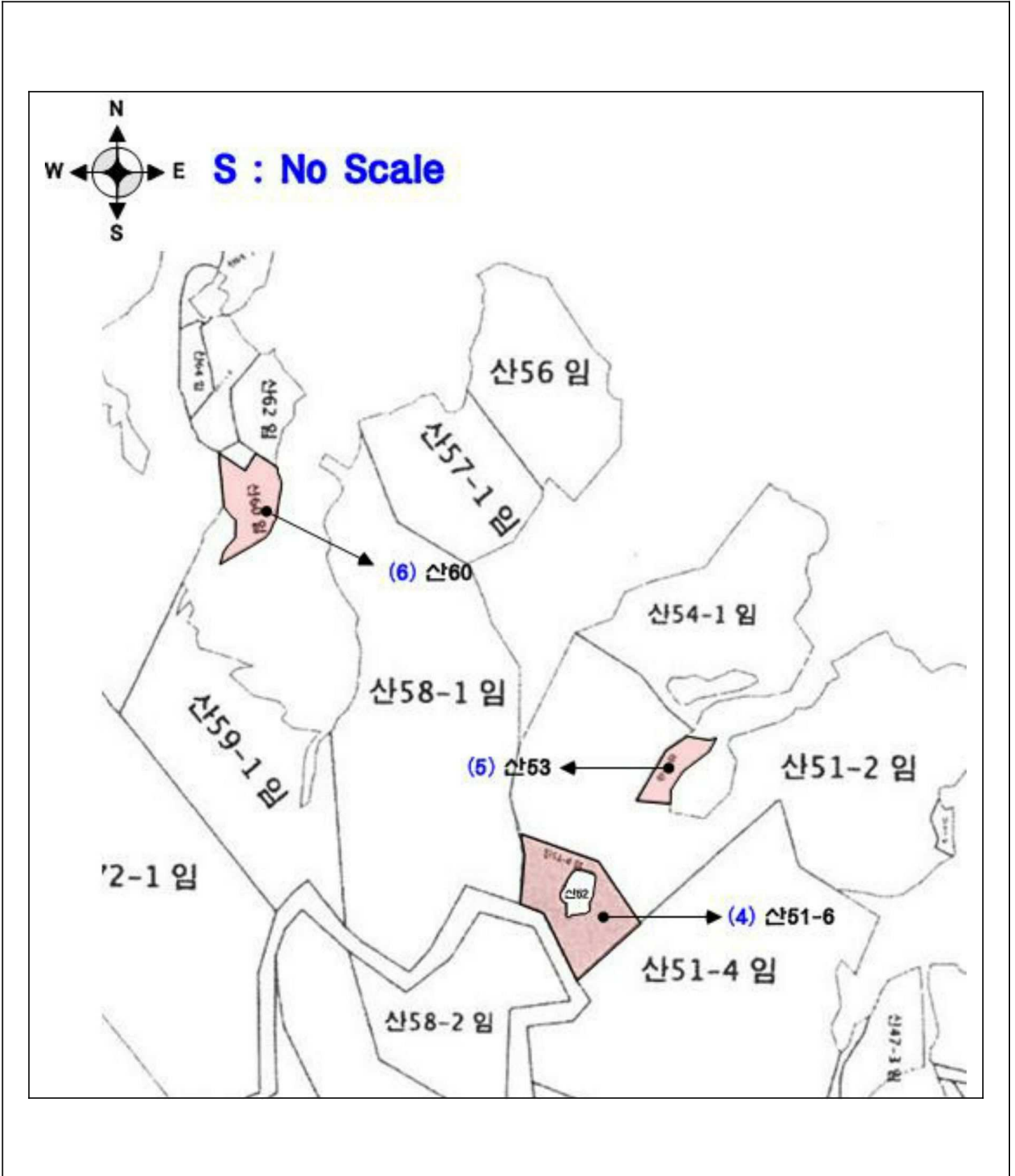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72외 5필지



지 적 도



건물개황도





(1)



(2)



(3)



(3)-1



(4)



(4)-1



(5)



(6)